

#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삼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9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.

발의자 : 김삼화 · 김경진 · 신용현

윤영일 · 이언주 · 김성식

김종회 · 박선숙 · 장정숙

손금주 · 송기석 · 최도자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1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의료지원”을 “의료지원(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, 문 화공간지원, <u>의료지원</u>, 정서지 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자립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료지원(「청소년 복지 지원법」 제6조제1항에 따 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)</u> -----. -----.</p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